

인천지방법원 2019. 7. 16 선고 2019가단224787 판결 [설비매매대금 청구의 소]

---

##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김훈희

피 고 B 주식회사"

판결 선고 2019. 7. 16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 4. 30.부터 2019 . 5. 31.까지는연 1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2019.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연 15%로 구하는 것 이외에는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따라, 2019. 6. 1.부터는 소촉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2% 가 되었으므로, 2019 . 6. 1.부터는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부분을 기각한다.

판사 배구민

별지